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교 육 청 소 년 과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

구 미 시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·교육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구미시장학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지원 필요

나. (재)구미시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장학·학숙 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

(2) 출연금액 : 720백만원

(3)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사업 개요

(1) 사 업 명 : 구미시장학재단 운영

(2) 사업기간 : 2027년 1월 ~ 12월

(3) 사업내용

- 장학사업 (지역정주형 인재육성, 신규 장학제도 운영)
- 구미학숙 운영 (시설관리, 입사생 역량강화 지원)
-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(교육복지 사업, 교육정책 제언 등)

다. 출연의 필요성

(1) 구미시 장학·교육지원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구미시장학재단의 사무국 운영 기반 마련 및 안정적 운영 지원

(2) 구미시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
(3)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　　의 : 예산재정과장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~ ④ (중 략)

⑤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 략)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구미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학·교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에 따른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구미시장학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, 사업비, 경상비로 시비 100%로 추계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 출	720,000	900,331	918,662	1,067,873	1,090,275	4,697,141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 비	720,000	900,331	918,662	1,067,873	1,090,275	4,697,141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재단 운영계획 및 사업 규모, 인건비·운영비 상승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이주호(☎480-2703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(2027년)

구 분		금액 (천원)	산 출 내 역
총 계		720,000	
인건비	인건비	100,500	◉ 대표이사 : 48,000,000원 × 1명 = 48,000,000원 - 기준연봉(5급10호봉) : 63,660,000원 ◉ 8급 : 27,000,000원 × 1명 = 27,000,000원 - 기준연봉(8급3호봉) : 36,187,500원 ◉ 9급 : 25,500,000원 × 1명 = 25,500,000원 - 기준연봉(9급1호봉) : 34,555,000원 ※ 연봉기준 9개월분 반영
사업비	구미학숙 운영	150,000	◉ 인건비 124,000,000원 - 사감 : 15,000,000원 × 2명 = 30,000,000원 - 조리원 : 22,000,000원 × 1명 = 22,000,000원 - 제수당 : 60,000,000원 × 1식 = 60,000,000원 - 사회보험료 : 12,000,000원 × 1식 = 12,000,000원 ◉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6,000,000원
	장학사업	420,000	◉ 300,000원 × 140명 × 10개월 = 420,000,000원
운영비	경상비	49,500	◉ 5,500,000원 × 9개월 = 49,500,000원

소 관 부 서		교육청소년과
입	과 장	민 명 숙
안	팀 장	심 주 희
자	담 당 자	이 주 호 (480-2703)